

입후보 자격 박탈

대상: 2022학년도 문화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모아’

위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선거 시행세칙 제9장 별칙 제35조(입후보자 등록 및 당선취소), 제36조(처벌) 및 2022학년도 학생회 본선거 시행규칙 제22조(입후보 자격 박탈)에 의거, 세 차례의 경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2021.11.15.)에 의해 입후보 자격을 박탈함.

<1차 경고 (2021. 11. 03.의결)>

- 위반사항 : [2022학년도 학생회 본선거 시행규칙 제11조] (SNS)

1.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홍보의 게시는 중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득한 계정만 허용한다.
2. 선거운동본부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 SNS계정으로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의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선거를 독려할 수 있다.
 - 가. 온라인 홍보를 할 선거운동원은 명단과 함께 개인의 SNS계정을 제출한다.
3. 선거운동본부원은 선본부에서 우선 발행한 홍보물 외 선거 독려와 관련한 어떠한 홍보물도 독자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

<2차 경고 (2021. 11. 12.의결)>

- 위반사항 : [2022학년도 학생회 본선거 시행규칙] 제12조 (단체채팅방)

3.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선거운동본부에게 있다.
 - 가. 중선관위의 심의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나.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서 변경된 홍보물로 게시가 이루어질 경우
 - 다.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3차 경고 (2021. 11. 15.의결)>

- 위반사항 : [총학생회선거 시행세칙] 제21조 (선거운동)

중앙선관위와 단대선관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4. 각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금품제공, 폭행 및 협박, 유언비어 유포, 불순한 언동, 타 후보의 비방, 학생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7. 등록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주재 하에 선거관련 제반 준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8. 온라인 선거 시 모든 게시물은 선관위의 승인 후 게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학생회 본선거 시행규칙] 제8조 (선거운동)

2.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나. 투표를 강요하는 질문이나 행위

제11조 (SNS)

2. 선거운동본부원은 투표 시작 시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 SNS 계정으로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의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통해 선거를 독려할 수 있다.

나. 선거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질의응답만을 허용한다.

제12조 (단체채팅방)

1. 각 학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한 카카오톡 홍보의 전권은 해당 학과의 학회장에게 있다.
2. 선본장이 아닌 정·부후보를 비롯한 제3자가 온라인 홍보와 관련하여 학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의 강요나 금품 전달이 있을 시 주의를 생략하고 경고로 처리한다.

2021. 11. 15.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